

#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출자

## 동의안

# 심사보고

의안 번호	2120
----------	------

2024. 09. 03.  
주택공간위원회

### I.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8. 13. 서울특별시시장 제출
- 회부일자: 2024. 8. 14.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6회 임시회 제1차 주택공간위원회 (2024. 9. 3. 상정·의결)

### II. 제안설명 요지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 1. 제안이유

가.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07년 이후로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존 공공임대주택제도와는 다르게 전세계약 방식과 다양한 공급면적의 장기전세주택 제도를 도입하여, 2024년 7월 기준 34,632호를 서울시민에게 공급하였음.

나. 이 중 대형평형 장기전세주택은 국고보조금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없이 시비가 전액 투입된 사업(85㎡초과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건설사업비의 58.9%(3,513억원)를 서울주택도시공사자금으로 조달)으로 서울주택도

시공사의 재정부담이 가중되었으며, 행정자치부는 서울주택도시공사 공사채 발행 한도를 부채비율과 연동하여 승인함으로써 신규사업 및 임대주택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음.

다. 이에 따라 2016년 제271회 시의회에서 현금출자(197,120백만원) 및 현물출자(19호)승인 받았으며, 현금출자는 12년 동안('16년~'27년)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임.

라.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영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출자기관 개요

1) 기관명칭 : (주)서울리츠임대주택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금 : 173,673백만원

3) 주주구성

- 서울시 출자금 : 202,717백만원(89.3%)

(현금197,120백만원, 현물5,597백만원)

-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금 : 24,280백만원(10.7%)

(현금24,280백만원)

### 나. 출자 추진근거 및 필요성

1) 추진근거 : 대형 평형 장기전세주택 리츠 운영계획(안)

(서울특별시상 방침 제274호, 2016.9.13)

2) 필요성

- 출자기관의 장기전세주택 매입을 통한 서울주택도시공사 재정부담 경감

-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재정부담 경감 및 부채비율 완화를 통한 공공임대

## 주택 추가 사업여력 확보

다. 주요사업 : 장기전세주택(85㎡ 초과) 2,450호 임대 운영 및 관리

라. 현금출자

1) 출자계획

○ 총 197,120백만원(12년('16~'27)동안 분할하여 지급)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4,280	24,280	24,280	24,280	12,140	12,140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12,140	12,140	12,140	12,140	12,140	15,020

2) 금회 현금출자 : 12,140백만원('25년도 분)

마. 의사록 및 결산보고서 : 별도 첨부

### Ⅲ. 검토보고 요지 (윤은정 수석전문위원)

#### 가. 제안경위

○ 이 동의안은 2016년 대형 장기전세주택(85㎡ 초과)의 운영방식을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소유·운영하는 방식에서 서울리츠 3호(이하 '리츠 3호')가 소유·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sup>1)</sup>한 이후 12년간 매년 리츠 3호에 출자기로 함에 따라, 2025년 지급분인 121억 4천만원

1) '대형 평형 장기전세주택 리츠 운영계획(안)', 시장방침 제274호(주택정책과-16087, 2016.9.13),

리츠방식으로 전환한 사유 : 대형평형은 국고보조금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이 되지 않아 SH공사 자체 재원으로 건설비를 조달하고 있어 공사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가 공사채 발행한도를 부채비율과 연동하여 승인\*함으로써 신규사업 및 임대주택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

\* 2017년도 행자부의 공기업 공사채 발행 부채비율 230%를 충족해야 하고, 2017년 도래하는 공사채를 상환해야 하는 등 공사의 재정건전성 확보 필요

을 출자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2)에 따라 서울특별시회의의 의결을 받고자 2024년 8월 13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대형 평형 장기전세주택 리츠 출자계획(2016.9)

▶ 총 197,120백만원 (12년('16~'27)동안 분할하여 지급)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4,280	24,280	24,280	24,280	12,140	12,140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12,140	12,140	12,140	12,140	12,140	15,020

- 리츠 3호는 장기전세주택 중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세대를 매입·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10월 설립<sup>3)</sup>되었으며, 매입대상인 14개 지구 28개 단지 2,450호(검토보고서 붙임3. 참고)는 이미 입주가 완료된 상황임. 서울시는 리츠가 설립된 2016년에 시의회로부터 최초 동의를 받은 후 매년 추가 동의 없이 출자해 왔으나 '2021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 개정(2020.7.)<sup>4)</sup>됨에 따라 2021년부

2)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3) '리츠3호'는 대형 장기전세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유기기간(20년)동안 운영 후 매각하여 출자자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임. 서울시와 SH공사의 100% 출자로 설립('16.10.14)되었으며\*, SH공사는 해당 주택을 감정평가금액으로 리츠에 양도하고, 리츠는 SH공사에 매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상품을 이용하여 보험사의 자금을 유치하며, 자산관리회사(AMC)인 (주)서울투자운용이 자금을 운용하고, 입주자관리는 SH공사가 담당함.

\*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리츠가 공공임대주택사업자의 지위를 득하기 위하여는 공공이 100% 출자하여야 하는 바, 서울시와 SH공사가 100% 출자하게 되었음. (검토보고서 붙임2 참조)

4) '2021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개정사항 : 502 출자금

1. 용자금(501)을 제외한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하되, 출자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 및 제3항)

※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출자·출연 및 연례적·반복적 출자·출연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경우

터는 매년 출자분에 대해서도 시의회 동의를 받고 있음<sup>5)</sup>).

- 이 사업은 최초 시의회 출자동의<sup>6)</sup> 이후 리츠 3호의 정관에 따라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sup>7)</sup>하여 재무운영 등을 점검·승인하고 있는데, 금년 3월 29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재무제표<sup>8)</sup>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 리츠 3호의 현금자산은 전년대비 1억 6천1백만원 증가한 55억 6천9백만원으로 확인되는 가운데<sup>9)</sup>(검토보고서 붙임5. 참고), 2024년도의 현금유입(259억 8천5백만원)과 현금유출(268억 1천6백만원)(검토보고서 붙임6. 참고)을 감안할 때, 2025년도 자산운용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끝으로, 리츠3호 운용이 종료되는 2035년 이후 대형 평형 장기전세주택의 매각 또는 재임대 여부 등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도 필요하겠음.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V. 토론요지 : 없음

---

#####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일정기간 정하여 얻을 수 있음

- 5) 리츠3호는 2027년까지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출자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예산 편성 및 운영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6) 제271회 정례회(2016.12.16.)
- 7) 리츠3호 정관 제18조(주주총회의 종류와 개최시기)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이사회의 결의와 관련 법률에 따라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
- 8) (주)서울리츠임대주택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재무제표
- 9) '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말하며, 2020년 말 기준 72억원, 2021년 말 기준 151억원, 2022년 말 기준 54억원, 2023년 말 기준 56억원으로, 2023년 재무운영결과 현금자산은 전년대비 1억 6천 1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단기금융상품 해지 및 자본금납입에 따른 현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Ⅵ. 심사결과 : 원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

의안 번호	2120
----------	------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3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07년 이후로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기존 공공임대주택제도와는 다르게 전세계약 방식과 다양한 공급면적의 장기전세주택 제도를 도입하여, 2024년 7월 기준 34,632호를 서울시민에게 공급하였음.
- 나. 이 중 대형평형 장기전세주택은 국고보조금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없이 시비가 전액 투입된 사업(85㎡초과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건설사업비의 58.9%(3,513억원)를 서울주택도시공사자금으로 조달)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재정부담이 가중되었으며, 행정자치부는 서울주택도시공사 공사채 발행 한도를 부채비율과 연동하여 승인함으로써 신규사업 및 임대주택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음.
- 다. 이에 따라 2016년 제271회 시의회에서 현금출자(197,120백만원) 및 현물출자(19호)승인 받았으며, 현금출자는 12년 동안('16년~'27년)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임.
- 라.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영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출자기관 개요

- 1) 기관명칭 : (주)서울리츠임대주택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2) 자본금 : 173,673백만원
- 3) 주주구성
  - 서울시 출자금 : 202,717백만원(89.3%)  
(현금197,120백만원, 현물5,597백만원)
  -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금 : 24,280백만원(10.7%)  
(현금24,280백만원)

### 나. 출자 추진근거 및 필요성

- 1) 추진근거 : 대형 평형 장기전세주택 리츠 운영계획(안)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74호, 2016.9.13)
- 2) 필요성
  - 출자기관의 장기전세주택 매입을 통한 서울주택도시공사 재정부담 경감
  -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재정부담 경감 및 부채비율 완화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추가 사업여력 확보

### 다. 주요사업 : 장기전세주택(85㎡ 초과) 2,450호 임대 운영 및 관리



라. 현금출자

1) 출자계획

○ 총 197,120백만원(12년('16~'27)동안 분할하여 지급)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4,280	24,280	24,280	24,280	12,140	12,140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12,140	12,140	12,140	12,140	12,140	15,020

2) 금회 현금출자 : 12,140백만원('25년도 분)

마. 의사록 및 결산보고서 : 별도 첨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부동산투자회사법, 공공주택특별법

-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5조(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 3)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공공주택사업자) 제1항 제6호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 성 자 : 주택실 임대주택과 이기택 (☎ 2133-9578)

## 참 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제5조(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290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을 할 수 없다.

###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공공주택사업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
6. 주택도시기금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주)서울리츠임대주택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 8 기

2023년 01월 0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제 7 기

2022년 01월 0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한 일 회 계 법 인

#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주)서울리츠임대주택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 감사의견

우리는 (주)서울리츠임대주택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23년 12월 31일과 2022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23년 12월 31일과 2022년 12월 31일 현재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회사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회사의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경영진이 사용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재무제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합니다.

한 일 회 계 법 인  
대 표 이 사 유 승 안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2024년 2월 23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 (첨부)재 무 제 표

(주)서울리츠임대주택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제 8 기

2023년 01월 0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 제 7 기

2022년 01월 0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첨부된 재무제표는 당사가 작성한 것입니다."

(주)서울리츠임대주택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이사 한경선

본점 소재지: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9, 6층(개포동, 서울강남우체국)  
(전 화) 02-6958-2385

재 무 상 태 표

제 8(당)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7(전)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주)서울리츠임대주택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8(당) 기	제 7(전) 기
자 산		
I. 유동자산	49,820,418,805	52,664,896,478
1. 현금및현금성자산 (주석2,3)	5,568,815,535	5,407,183,400
2. 단기금융상품 (주석3)	29,039,875,586	35,000,000,000
3. 선급금(주석13)	3,922,757,903	4,292,906,231
4. 미수수익 (주석3)	524,466,406	370,762,761
5. 선급비용	1,758,950,095	1,754,094,522
6. 미수금 (주석3)	8,774,053,490	5,770,651,474
7. 선급법인세	231,499,790	69,298,090
II. 비유동자산	958,621,656,634	967,286,485,042
(1) 투자자산	1,436,456,249	2,490,643,169
1. 장기금융상품(주석3)	1,436,456,249	2,490,643,169
(2) 유형자산	956,485,094,385	964,095,735,873
1. 토지 (주석2,4)	629,676,001,103	629,676,001,103
2. 건물 (주석2,4)	419,070,162,796	419,070,162,796
(감가상각누계액)	(92,261,069,514)	(84,650,428,026)
(3) 기타비유동자산	700,106,000	700,106,000
1. 기타보증금(주석3,13)	700,106,000	700,106,000
자 산 총 계	1,008,442,075,439	1,019,951,381,520
부 채		
I. 유동부채	1,130,553,634	704,990,484
1. 미지급금 (주석3,6,13)	921,265,815	550,647,729
2. 예수금	70,911,164	15,966,100
3. 미지급비용 (주석3,6)	138,376,655	138,376,655
II. 비유동부채	1,092,947,924,222	1,083,715,722,230
1. 장기차입금 (주석3,5,6,10)	378,050,000,000	378,050,000,000
2. 장기선수금	2,774,400,000	1,075,760,000
3. 임대보증금 (주석3,6)	686,449,735,060	681,878,251,179
4. 특별수선충당금 (주석2)	25,673,789,162	22,711,711,051
부 채 총 계	1,094,078,477,856	1,084,420,712,714
자 본		
I. 자본금 (주석7)	173,673,290,000	160,905,290,000
1. 보통주자본금	173,673,290,000	160,905,290,000
II. 자본조정	(918,871,735)	(853,442,812)
1. 주식할인발행차금	(918,871,735)	(853,442,812)



과 목	제 8(당) 기		제 7(전) 기	
Ⅲ. 결손금 (주석 8)		258,390,820,682		224,521,178,382
1. 미처리결손금	258,390,820,682		224,521,178,382	
자 본 총 계		(85,636,402,417)		(64,469,331,194)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008,442,075,439		1,019,951,381,520

"별첨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참조"

손익계산서

제 8(당)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7(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서울리츠임대주택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8(당) 기		제 7(전) 기	
I. 영업수익(주석2)		-		-
II. 영업비용		21,051,056,705		24,844,238,916
1. 임원급여(주석12)	3,600,000		3,600,000	
2. 자산관리수수료	440,000,000		440,000,000	
3. 자산보관수수료	44,000,000		44,000,000	
4. 사무수탁수수료	66,000,000		66,000,000	
5. 세금과공과금(주석12)	4,078,064,650		5,230,781,920	
6. 감가상각비(주석12)	7,610,641,488		13,969,005,420	
7. 수선유지비	5,219,864,728		1,804,862,184	
8. 특별수선충당전입비	2,962,078,111		2,599,844,960	
9. 지급수수료	280,020,824		337,099,418	
10. 부동산위탁관리비(주석13)	346,786,904		349,045,014	
III. 영업손익		(21,051,056,705)		(24,844,238,916)
IV. 영업외수익		1,699,153,459		762,140,911
1. 이자수익	1,672,532,329		733,406,746	
2. 연체료수익	26,568,417		26,009,724	
3. 잡이익	52,713		2,724,441	
V. 영업외비용		14,517,739,054		14,569,778,012
1. 이자비용(주석13)	14,517,443,176		14,569,778,011	
2. 잡손실	295,878		1	
V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33,869,642,300)		(38,651,876,017)
VII. 법인세비용(주석2,11)		-		-
VIII. 당기순손익		(33,869,642,300)		(38,651,876,017)

"별첨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참조"

자 본 변 동 표

제 8(당)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7(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서울리츠임대주택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자 본 조 정	이 익 잉여금	총 계
I. 2022.01.01(전기초)	147,237,290,000	(783,436,489)	(185,869,302,365)	(39,415,448,854)
II. 변동내역				
1. 보통주발행	13,668,000,000	-	-	13,668,000,000
2. 주식할인발행차금	-	(70,006,323)	-	(70,006,323)
3. 당기순손익	-	-	(38,651,876,017)	(38,651,876,017)
III. 2022.12.31(전기말)	160,905,290,000	(853,442,812)	(224,521,178,382)	(64,469,331,194)
IV. 2023.01.01(당기초)	160,905,290,000	(853,442,812)	(224,521,178,382)	(64,469,331,194)
V. 변동내역				
1. 보통주발행	12,768,000,000	-	-	12,768,000,000
2. 주식할인발행차금	-	(65,428,923)	-	(65,428,923)
3. 당기순손익	-	-	(33,869,642,300)	(33,869,642,300)
VI. 2023.12.31(당기말)	173,673,290,000	(918,871,735)	(258,390,820,682)	(85,636,402,417)

"별첨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참조"

현금흐름표

제 8(당)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7(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서울리츠임대주택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8(당) 기		제 7(전) 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9,555,250,276)		(6,580,416,377)
1. 당기순손익	(33,869,642,300)		(38,651,876,017)	
2. 현금유출이 없는 비용의 가산	10,572,719,599		16,568,850,380	
가. 감가상각비	7,610,641,488		13,969,005,420	
나. 특별수선충당금의 전입	2,962,078,111		2,599,844,960	
3. 현금유입이 없는 수익의 차감	-		-	
4.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변동	3,741,672,425		15,502,609,260	
가. 선급금의 감소(증가)	370,148,328		(1,640,723,990)	
나. 미수수익의 감소(증가)	(153,703,645)		(283,417,760)	
다.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4,855,573)		-	
라. 미수금의 감소(증가)	(3,003,402,016)		(4,351,596,628)	
마. 선급법인세의 감소(증가)	(162,201,700)		(45,308,680)	
바.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370,618,086		266,525,445	
사. 예수금의 증가(감소)	54,945,064		14,382,883	
아.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7)	
자. 장기선수금의 증가(감소)	2,774,400,000		1,075,760,000	
차. 임대보증금의 증가(감소)	3,495,723,881		21,308,975,790	
카. 특별수선충당금의 증가(감소)	-		(841,987,793)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014,311,334		(16,757,857,167)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59,054,186,920		35,000,000,000	
가. 단기금융상품의 해지	58,000,000,000		35,000,000,000	
나.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1,054,186,920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52,039,875,586		51,757,857,167	
가. 단기금융상품의 가입	52,039,875,586		50,000,000,000	
나.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		1,757,857,167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2,702,571,077		13,597,993,677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2,768,000,000		13,668,000,000	
가. 자본금납입	12,768,000,000		13,668,000,00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65,428,923		70,006,323	
가. 주식발행비용	65,428,923		70,006,323	
IV. 현금의 증감(배제)		161,632,135		(9,740,279,867)
V. 기초의 현금		5,407,183,400		15,147,463,267
VI. 기말의 현금		5,568,815,535		5,407,183,400

"별첨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참조"

## 주석

제 8(당)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7(전)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주)서울리츠임대주택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서울리츠임대주택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2016년 10월 14일에 설립되어 2016년 12월 15일에 국토교통부의 영업인가를 취득하였습니다.

1-1. 본사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9, 6층(개포동, 서울강남우체국)

1-2. 주요사업 내용: 부동산의 취득, 관리, 개량 및 처분, 주택건설사업, 부동산의 개발사업, 부동산의 임대차, 증권의 매매, 금융기관에의 예치,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 관리, 처분,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의 취득, 관리, 처분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투자, 운용하여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

### 1-3. 주요주주현황

주주명	보통주	
	주식수(주)	지분율
서울주택도시공사	4,479,200	12.90%
서울특별시	30,255,458	87.10%
합계	34,734,658	100.00%

1-4. 정관상 사업연도 : 매년 1월 1일 개시하여 12월 31일 종료(최초 사업연도는 회사 설립등기일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6월 30일에 종료하며, 2차 사업연도는 최초사업연도 말의 익일부터 12월 31일 종료)

1-5. 사업개요 :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소유한 장기전세주택 2,431호를 매입하고 서울시로부터 19세대를 출자받아 20년간 임대·운영후 매각

## 2. 중요회계처리방침

회사의 재무제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있으며, 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중요한 회계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 2-1. 현금및현금성자산

회사는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2-2. 유형자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그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또는 부지를 복원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해당 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도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생산능력 증대, 내용연수 연장, 상당한 원가절감 또는 품질향상을 가져오는 등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인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유형자산을 취득원가에서 아래의 추정내용연수와 건물을 정액법에 따라 산정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있습니다.

구분	추정내용연수
건물	50년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가장 최근에 평가된 성능수준을 초과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인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3. 수익의 인식기준

회사는 임대수익의 경우에는 기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인식하고, 분양전환 수익의 경우에는 재화에 대한 통제와 소유권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4. 법인세비용

회사의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부담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의 합계에 당기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가감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무조정 등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한 법인세효과를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의 과목으로 하여 차기 이후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과 상계처리하고 있으나, 일시적 차이로 인한 법인세효과는 실현가능성이 불확실하여 계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2-5.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측정

### 최초측정

회사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이 때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 금융부채의 경우에는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입니다. 그러나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로서 명목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유의적인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제공(수취)한 대가에 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었다면 그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되,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법(현재가치평가기법을 포함)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추정합니다. 다만, 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에 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었더라도, 자금의 사용에 따른 반대 급부(예를 들어 생산물 공급가액의 제약 등)를 부과하거나 제공하는 자금의 조달과 사용의 연계성이 확실한 경우 및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전체를 금융상품의 최초인식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단기매매증권, 파생상품(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과 같이 최초 인식 이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 또는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원가를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 또는 차감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금융상품의 현재가치 측정시에 당해 거래의 내재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이자율을 구할 수 없거나 동종시장이자율과의 차이가 유의적인 경우에는 동종시장이자율을 적용하고, 동종시장이자율을 실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가중평균이자율을 산출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기초로 회사의 신용도 등을 반영하여 회사에 적용될 자금조달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적용합니다.

### 후속측정

회사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 2-6. 채권·채무의 현재가치 평가

회사는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 당해 채권·채무로 인하여 미래에 수취하거나 지급할 총금액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채권·채무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인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 또는 환입하고 이를 이자비용 또는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7. 임대자산특별수선충당부채

회사는 임대주택의 장기 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임대주택의 보수 및 교체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부채를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4,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제57조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4를 적용하여 적립하고, 관련 특별수선충당부채전입액을 당기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2-8. 이익잉여금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이익처분시 이익준비금의 법정적립을 규정한 상법 제458조가 적용 배제되어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 제3항에 의하여 상법 제462조가 적용 배제되어 당해연도의 감가상각비 범위 안에서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이 가능합니다.

### 3. 금융상품의 구분 및 공정가치

3-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과 목	계정명	당 기 말		전 기 말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현금및현금성자산	보통예금	5,568,816	5,568,816	5,407,183	5,407,183
대여금및수취채권	단기금융상품	29,039,876	29,039,876	35,000,000	35,000,000
	미수금	8,774,053	8,774,053	5,770,651	5,770,651
	미수수익	524,466	524,466	370,763	370,763
	장기금융상품(주)	1,436,456	1,436,456	2,490,643	2,490,643
	기타보증금	700,106	700,106	700,106	700,106
합 계		46,043,773	46,043,773	49,739,346	49,739,346

(주) 장기금융상품은 특별수선충당금 관련 계좌 금액임.

3-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금융부채 범주	계정명	당 기 말		전 기 말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상각후원가로 평가하는 금융부채	미지급금	921,266	921,266	550,648	550,648
	미지급비용	138,377	138,377	138,377	138,377
	장기차입금	378,050,000	378,050,000	378,050,000	378,050,000
	임대보증금	686,449,735	686,449,735	681,878,251	681,878,251
금융부채 합계		1,065,559,378	1,065,559,378	1,060,617,276	1,060,617,276

#### 4. 유형자산

##### 4-1. 유형자산의 변동

당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기>

(단위 : 천원)

구분	토지	건물	합계
당기초	629,676,001	334,419,735	964,095,736
당기 취득	-	-	-
감가상각	-	(7,610,642)	(7,610,642)
당기말	629,676,001	326,809,093	956,485,094
취득원가	629,676,001	419,070,163	1,048,746,164
상각누계액	-	(92,261,070)	(92,261,070)

상기 토지·건물은 회사가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매입한 28개 지구 2,431세대 및 서울시로부터 출자받은 19세대에 대한 장기전세주택입니다.

#####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토지	건물	합계
전기초	629,676,001	348,388,740	978,064,741
전기 취득	-	-	-
감가상각	-	(13,969,005)	(13,969,005)
전기말	629,676,001	334,419,735	964,095,736
취득원가	629,676,001	419,070,163	1,048,746,164
상각누계액	-	(84,650,428)	(84,650,428)

상기 토지·건물은 회사가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매입한 28개 지구 2,431세대 및 서울시로부터 출자받은 19세대에 대한 장기전세주택입니다.

#### 4-2.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보유 토지의 장부가액 및 공시지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소재지	세대수	면적(㎡)	당 기 말		전 기 말		비고
			장부가액	공시지가	장부가액	공시지가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695	108	9,093.60	31,868,691	60,490,627	31,868,691	65,001,053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668	102	9,880.74	30,192,506	59,343,725	30,192,506	62,742,699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699	210	19,536.30	63,127,909	131,205,791	63,127,909	140,973,941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707	36	2,848.32	9,645,491	19,539,475	9,645,491	20,792,736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717	47	4,253.50	12,972,594	27,503,131	12,972,594	29,710,698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490	287	24,748.23	79,837,743	175,712,433	79,837,743	186,651,151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750	24	1,786.80	6,929,275	9,271,705	6,929,275	10,050,750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735	24	1,951.20	6,846,947	8,191,138	6,846,947	8,879,911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312	30	2,442.00	5,293,730	8,993,886	5,293,730	9,641,016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736	108	9,255.60	36,992,447	62,928,824	36,992,447	65,807,316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741	78	6,074.77	25,005,799	39,564,990	25,005,799	41,405,646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743	2	206.90	700,525	1,408,161	700,525	1,516,577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752	133	10,286.73	45,113,783	80,339,361	45,113,783	86,501,113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525	123	8,351.70	38,832,686	52,457,028	38,832,686	55,121,220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582	54	4,166.10	16,007,031	30,216,723	16,007,031	32,228,950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607	28	2,215.08	8,352,458	16,229,891	8,352,458	17,310,850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816	38	2,927.52	5,453,566	9,974,061	5,453,566	10,635,680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817	136	12,520.16	23,154,426	43,044,310	23,154,426	45,898,907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317	108	8,867.36	22,461,276	34,680,238	22,461,276	36,950,282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1321	42	4,482.75	9,877,473	17,729,292	9,877,473	18,841,015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1322	93	13,717.78	24,976,740	52,607,682	24,976,740	56,832,758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1316	24	2,025.29	5,395,811	8,427,223	5,395,811	9,051,012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1317	36	3,368.02	8,165,042	13,876,226	8,165,042	14,903,471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286-2	37	921.35	6,985,475	11,222,020	6,985,475	11,913,031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281	92	6,386.64	16,302,176	25,118,655	16,302,176	26,919,688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천왕도시 개발사업지구2단지	49	3,994.48	11,015,229	15,103,129	11,015,229	16,033,843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천왕도시 개발사업지구3단지	230	17,714.60	43,296,142	62,018,815	43,296,142	65,845,167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천왕도시 개발사업지구5단지	152	11,372.64	29,637,107	39,815,613	29,637,107	42,704,262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167	11	188.88	2,635,685	1,356,725	2,635,685	1,456,265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1500	8	356.73	2,600,238	2,304,840	2,600,238	2,451,099	
합계	2,450	205,941.77	629,676,001	1,120,675,718	629,676,001	1,194,772,107	

#### 4-3. 담보제공현황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근저당설정금액	근저당권자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695 외 27개 지구 부동산	453,660,000	주택도시보증공사

#### 5. 장기차입금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의 장기차입금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차입처	차입일	만기일	연이자율	당기말	전기말
한화생명보험(주)	2016-12-28	2031-12-28	3.34%	182,000,000	182,000,000
	2017-06-28	2031-12-28	3.34%	46,050,000	46,050,000
한화손해보험(주)	2016-12-28	2031-12-28	3.34%	100,000,000	100,000,000
흥국화재해상보험(주)	2016-12-28	2031-12-28	3.34%	50,000,000	50,000,000
합계				378,050,000	378,050,000

한편, 회사가 장기차입금 조달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차입처	약정이자율	약정한도
한화생명보험(주)	3.34%	228,050,000
한화손해보험(주)	3.34%	100,000,000
흥국화재해상보험(주)	3.34%	50,000,000
합계		378,050,000

(주) 상기 대출과 관련하여 회사는 대출원리금의 상환에 대한 보증채무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을 체결하였습니다.

## 6. 금융부채

### 6-1. 금융부채의 만기분석 및 유동성위험관리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의 금융부채의 만기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기말>

(단위 : 천원)

구분	1년 이하	1년 초과 5년 이하	5년 초과	합계
미지급금	921,266	-	-	921,266
미지급비용	138,377	-	-	138,377
장기차입금	-	-	378,050,000	378,050,000
임대보증금	-	686,449,735	-	686,449,735
합계	1,059,643	686,449,735	378,050,000	1,065,559,378

(주1) 상기 금액은 액면금액 기준입니다.

(주2) 상기 임대보증금 관련하여 기본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나 임차인의 권리에 따라 2년 단위로 연장 가능합니다.

#### <전기말>

(단위 : 천원)

구분	1년 이하	1년 초과 5년 이하	5년 초과	합계
미지급금	550,648	-	-	550,648
미지급비용	138,377	-	-	138,377
장기차입금	-	-	378,050,000	378,050,000
임대보증금	-	681,878,251	-	681,878,251
합계	689,025	681,878,251	378,050,000	1,060,617,276

(주1) 상기 금액은 액면금액 기준입니다.

(주2) 상기 임대보증금 관련하여 기본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나 임차인의 권리에 따라 2년 단위로 연장 가능합니다.

## 7. 자본금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의 자본금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기말>

(단위 : 주, 천원)

수권주식수	발행주식수	1주당 금액(원)	납입자본금
50,000,000	34,734,658	5,000	173,673,290

주주명	보통주	
	주식수(주)	지분율
서울주택도시공사	4,479,200	12.90%
서울특별시	30,255,458	87.10%
합계	34,734,658	100.00%

### <전기말>

(단위 : 주, 천원)

수권주식수	발행주식수	1주당 금액(원)	납입자본금
50,000,000	32,181,058	5,000	160,905,290

주주명	보통주	
	주식수(주)	지분율
서울주택도시공사	4,353,600	13.53%
서울특별시	27,827,458	86.47%
합계	32,181,058	100.00%

## 8. 결손금처리계산서

회사의 당기 및 전기 결손금처리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8(당) 기	2023년 01월 0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제 7(전) 기	2022년 01월 0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처리에정일	2024년 03월 29일	처리확정일	2023년 03월 31일

(단위 : 원)

과 목	제 8(당) 기		제 7(전) 기	
I. 미처리결손금		258,390,820,682		224,521,178,382
1.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224,521,178,382		185,869,302,365	
2. 당기순손실(이익)	33,869,642,300		38,651,876,017	
II. 결손금처리액		-		-
III.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258,390,820,682		224,521,178,382

## 9. 포괄손익계산서

당기 및 전기 회사의 포괄이익은 당기순이익과 동일합니다.



## 10. 주요 약정사항

### 10-1. 자산관리계약

회사는 서울투자운용 주식회사와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의 취득, 개발, 임대, 관리, 개량 및 처분 등 회사의 목적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위탁하고, 자산관리위탁계약서상 기본 자산관리위탁수수료를 분기 종료 후 지급합니다.

### 10-2. 일반사무위탁계약

회사는 우리펀드서비스 주식회사와 일반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일반사무를 위탁하였으며, 일반사무위탁계약서에 따른 보수를 매 분기 종료 후 지급합니다.

### 10-3. 자산보관계약

회사는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부동산, 유가증권 및 현금 등의 자산 보관 및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자산보관계약을 체결하고, 자산보관계약서에 따른 보수를 매 분기 종료 후 지급합니다.

### 10-4. 장기차입금 관련 보증

회사는 회사의 장기차입금과 관련하여 회사가 대주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가.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나. 보증원금 : 378,050,000,000원 한도 내에서 실제 차입금액

다. 보증기간 : 대출실행일부터 2031년 12월 27일

라. 보증료 : 실제 차입금액에 대하여 실제 차입일로부터 차기 보증료 지급일까지 0.5%를 적용하여 일할계산한 금액

11. 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자산(부채)

11-1. 당기의 법인세부담액 및 법인세비용은 없습니다.

11-2. 당기 중 회사의 일시적차이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계정과목	기초	감소	증가	기말
특별수선충당금	22,711,711	-	2,962,078	25,673,789
감가상각비한도초과	170	-	-	170
미수수익	(370,763)	(370,763)	(524,466)	(524,466)
합계	22,341,118	(370,763)	2,437,612	25,149,493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32조 및 정관 제54조 2항에 따라 당기의 감가상각비 범위 내에서 당기순이익 및 과세소득, 자본적지출계획 및 배당여력 현금보유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으나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에 근거하여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동 금액에 대해 당해 사업연도 당기 소득금액 계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바 향후 법인세부담액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계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2. 부가가치 계산에 필요한 계정과목 및 금액

회사의 당기 및 전기 중 부가가치 산정에 필요한 계정과목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임원급여	3,600	3,600
세금과공과금	4,078,065	5,230,782
감가상각비	7,610,641	13,969,005
특별수선충당금전입비	2,962,078	2,599,845
합계	14,654,384	21,803,232

13. 특수관계자와의 주요거래

13-1. 당기 및 전기 중 회사와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	과목	당기	전기
서울주택도시공사	부동산위탁관리비	323,400	323,400
	이자비용	-	52,658
합계		323,400	376,058

13-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한 중요한 채권 및 채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	과목	당기말	전기말
서울주택도시공사	선급금	3,922,758	4,292,330
서울주택도시공사	기타보증금	700,106	700,106

#### 14. 재무제표 확정일 등

2024년 3월 15일에 개최될 이사회에서 제 8 기 정기주주총회(2024년 3월 29일 예정)에 제출할 재무제표가 이의없이 승인될 예정이며, 보고기간 종료일 이후 감사보고서 작성일 사이에 발생한 중요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 외부감사 실시내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첨부합니다.

## 1. 감사대상업무

회 사 명	(주)서울리츠임대주택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감사대상 사업연도	2023년 01월 0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 2. 감사참여자 구분별 인원수 및 감사시간

(단위 : 명, 시간)

감사참여자 인원수 및 시간	품질관리 검토자 (심리실 등)		감사업무 담당 회계사						전산감사· 세무·가치평가 등 전문가		건설계약 등 수주산업 전문가		합계		
			담당이사 (업무수행이사)		등록 공인회계사		수습 공인회계사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투입 인원수	1	1	1	1	2	2	-	-	-	-	-	-	4	4	
투입 시간	분·반기검토	3	3	3	3	13	13	-	-	-	-	-	-	19	19
	감사	4	4	4	4	28	26	-	-	-	-	-	-	36	34
	합계	7	7	7	7	41	39	-	-	-	-	-	-	55	53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구 분	내 역							
전반감사계획 (감사착수단계)	수행시기	2023.09.07~2023.09.08			1	일		
	주요내용	업무팀 구성 및 팀토의 수행						
현장감사 주요내용	수행시기		투입인원			주요 감사업무 수행내용		
	2024.02.06~2024.02.08		상주	비상주				
		3	일	2	명	1	명	실증적 분석절차 및 세부테스트 수행
재고자산실사(입회)	실사(입회)시기	-				-	일	
	실사(입회)장소	-						
	실사(입회)대상	-						
금융자산실사(입회)	실사(입회)시기	-				-	일	
	실사(입회)장소	-						
	실사(입회)대상	-						
외부조회	금융거래조회	○	채권채무조회		-	변호사조회	-	
	기타조회	-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횟수	2	회
	수행시기	2023.09.08 / 2024.02.23	
외부전문가 활용	감사 활용 내용	-	
	수행시기	-	- 일

#### 4. 감사(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

구분	일자	참석자	방식	주요 논의 내용
1	2023년 09월 08일	감사, 담당이사 및 담당회계사	서면회의	전반 감사계획에 대한 논의
2	2024년 02월 23일	감사, 담당이사 및 담당회계사	서면회의	감사결과에 대한 논의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15, 7층  
(반포동, 홍익대 강남관)  
[별지 제33호서식]

공중  
인가  
법무법인 민주

(전화) T.02-591-8868  
(팩스) F.02-591-5841

등부 2024년 제 499 호

# 인 증 서

# 주식회사 서울리츠임대주택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2023년 제7차 이사회 의사록

주식회사 서울리츠임대주택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회사”)의 이사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되다.

일 시: 2023년 12월 11일(월)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9, 6층(개포동, 서울강남우체국빌딩) 소재 본점 회의실

이사총수 3명	출석이사수 3명
감사총수 1명	출석감사수 1명

의장인 대표이사 한경선은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은 법정 수에 달한 이사의 출석으로 본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고하고 개최를 선언하다. 이어서, 의장은 다음 안건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 제1호 안건: 신주 발행의 건

의장은 본 회사의 사업확장을 위하여 기명식 보통주식 [2,553,600]주 (1주당 액면가 [5,000]원, 발행가 [5,000]원)의 신주를 발행할 필요성을 설명한 후 이에 대한 승인을 구한 바, 출석한 이사들은 검토 후 다음과 같이 신주를 발행할 것을 승인하여 가결하다.

#### 가. 신주의 내용

(1) 발행할 신주의 종류 및 수:

① 기명식 보통주식 2,553,600주

(2) 신주의 발행가액: 금 12,768,000,000원

(1주당 발행가액 금 [5,000]원)

(3) 신주의 청약일: 2024년 1월 23일

(4) 신주의 납입기일: 2024년 1월 23일

(5) 주금납입은행: [우리]은행 [서울주택도시공사]지점

나. 신주의 인수방법: 정관 제1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주주 배정방식으로, 발행



신주를 다음과 같이 배정

신주인수인	배정주식수	인수금액
서울특별시	2,224,186주	금11,120,930,000원
서울주택도시공사	329,414주	금1,647,070,000원

다. 기타사항은 대표이사에 일임한다.

**제2호 안건: 실권주 처리의 건**

의장은 각 주주들에게 신주식을 안분배정하였으나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배정받은 주식 329,414주 중 125,600주에 대하여는 청약을 하고 나머지 203,814주의 청약을 포기할 의사를 밝혀, 실권주가 발생하였음을 설명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심의를 구한바, 실권주 전부를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로 전원이의없이 찬성하여 이를 승인가결하다.

- 1) 신주의 발행예정 주식수: 보통주식 2,553,600주
- 2) 실권주: 203,814주
- 3) 처리방법: 실권주 전부를 주주 서울특별시가 인수하고 납입일(2024.1.23.)까지 주식인수대금을 납입기로 한다.
- 4) 실권주처리후 주식배정

신주인수인	배정주식수	인수금액
서울특별시	2,428,000주	금 12,140,000,000원
서울주택도시공사	125,600주	금 628,000,000원

**제3호 안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결정의 건**

의장은 아래와 같이 임시 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를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이에 출석한 이사 전원은 동 안건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 후 원안대로 승인가결 하다.



- 아 래 -

1. 개최 일시 : 2023년 12월 27일(수) 오전 10시

2. 개최 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9, 6층(개포동, 서울강남우체국빌딩)  
서울투자운용(주) 회의실

3. 회의 목적사항

<의결안건>

제1호 안건 : 2023년 2차 장기전세주택(공가) 공급기준 결정의 건

의장은 이상으로 금일의 안건이 전부 심의 종료되었음을 설명한 후 폐회를 선언하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참석 이사들 및 감사가 다음  
에 기명 날인하다.

2023년 12월 11일

주식회사 서울리츠임대주택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의장 / 대표이사

한 경 선



기타비상무이사

김 기 천



기타비상무이사

김 성 배



감 사

이 윤 실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15, 7층  
(반포동, 홍익대 강남관)  
[별지 제37호서식]

공증  
인가 **법무법인 민주**

(전화) T.02-591-8868  
(팩스) F.02-591-5841

등부 2024 년 제 499호

**인 증**

위 주식회사 서울리츠임대주택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의

2023년 12월 11일자 이사회-----

의사록에 대하여 의장 대표이사 환경선, 기타비상무이사 김기천, 동 김성배, 감사 이윤실

등의 대리인 이소영은-----

-----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진술하고, -----

그 기명날인 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 -----

본 공증인은 위 진술과 아래 기재 자료에 의하여 그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

을 확인 하였다. -----

본 공증인은 위 촉탁인이 제시한 운전면허증-----에 의하여

그 사람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촉탁에 관한 대리권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2024년 01월 24일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

공증사무소명칭 **공증  
인가 법무법인 민주**

소 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재지표시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15, 7층 (반포동, 홍익대 강남관)

공증인 **공증담당변호사**

**이근서**



아 래

1. 진술서, 2. 확인서, 3.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

4. 정관, 5. 인감증명서, 6. 위임장-----